

#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62호
- 나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22년 8월 29일
- 라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2일

## 2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립대학교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에 따라 교직원 및 대학(원)생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업무·학업 몰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3월,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임
- 나. 2023년 2월 28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

#### 나. 시설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
- 시설규모 : 지상 2층(연면적 520.12㎡)
- 시설용도 : 영유아보육시설(어린이집)
- 준공일자 : ' 17. 12. 15.
- 개관일자 : ' 18. 3. 1.



#### 다. 운영개요

- 정·현원 : 정원 65명, 현원 37명(' 22. 7월 기준)
  - ※ 반별 정원은 보육수요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예정
- 교 직 원 : 총 16명(원장, 보육교사 8, 보조교사 3, 조리원 2, 미화원 1, 사무원 1)
- 입소대상 : 서울시립대 소속 교직원 및 대학(원)생의 자녀(만 8개월 이상 ~ 취학 전 아동)

#### 라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' 23. 3. 1. ~ ' 26. 2. 28.)
- 위탁업무
-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시설·장비·부품의 구매 및 관리
-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
- 예산 계획 및 집행
- 보육교직원 임용 및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
- 영유아 보호 및 교육
- ' 23년 위탁예산 : 506,160천원(전액 인건비)
- ※ 어린이집 총 예산 : 803,088천원(지자체보조금 등 296,928천원 포함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#### 마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민간위탁 추진현황
- \* 1차 : ' 18.1.8. ~ ' 21.1.7.(한솔어린이보육재단, 신규위탁)
- \* 2차 : ' 21.1.8. ~ ' 23.2.28.(한솔어린이보육재단, 재계약)

#### 바. 민간위탁 지속(재위탁) 필요성

- 보육에 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 운영기관에

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체계적·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#### 4. 참고사항

#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, 제24조

제14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(' 22.4.19.)

- ' 22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' 22.5.12.) : '적정' 의결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### 가. 동의안의 개요

- 서울시립대학교 직장어린이집(이하 ‘시립대 어린이집’)의 위탁기간 만료('23.2.28.)에 따라 사업자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.

### 나. 시립대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

- 유능하고 창의적인 우수한 여성인력이 결혼과 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·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가 필요하며, 특히 직장어린이집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.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(제21조 제1항),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(제14조).

- 시립대 어린이집은 교내 교직원과 학생들의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3월 개소되었으며 위탁운영을 맡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 신규 위탁과 재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.
- 현재 교직원은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학교 소속 교직원 및 대학(원)생의 자녀를 대상으로 정원 65명 중 현원 37명(만 8개월 이상 ~ 취학 전 아동)이 입소하여 교육 중임.

< 시립대 직장어린이집 운영현황 >

(단위 : 명)

구 분	출생일 기준 (2022.7.기준)	만0세	만1세	만2세	만3세	만4~5세
		'20.1.1. 이후 출생	'19.1.1~ 12.31	'18.1.1~ 12.31	'17.1.1~ 12.31	'15.1.1~ '16.12.31
교실수	5	1	1	1	1	1
학급수	8	2	2	2	1	1
정 원	65	6	10	14	15	20
현 원	37	3	10	14	10	-
교사수	7	1	2	2	2	-
기 타	원장 1, 보육교사 7, 보조교사 3, 조리사 2, 미화원 1, 사무원 1					

- 내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전체 예산 8억 3백만원 중 서울시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5억 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임.

## 다.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

- 시립대 어린이집은 교내 구성원의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조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므로, 보육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인력,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민관기관이 수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시립대 어린이집은 지난 5월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 통보를 받았으며,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기관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아 민간위탁운영의 적정성이 인정됨.
-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별도의 평가체계인 ‘평가인증제’로 평가하고 있어 성과보고서를 평가인증 결과서(인증 유효기간 2019.8.15.~2023.8.14.)로 대체하고 있음.
- 다만, 개소 이후 매년 정원대비 현원이 과부족 상태이고 특히 만 4세 이상부터는 유치원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작년 부터 현원이 없음.

### < 연도별 정·현원 현황 >

(단위 : 명)

구 분	합 계	만0세	만1세	만2세	만3세	만4~5세
정 원	65	6	10	14	15	20
2018년	32	6	10	7	3	6

2019년	41	6	10	12	7	6
2020년	38	5	10	9	8	6
2021년	32	6	10	12	4	-
2022년	37	3	10	14	10	-

\* 매년 12월 기준, 2022년은 6월 기준

- 반면에 신청자가 많은 만0세반과 만1세반의 경우에는 정원이 초과되어 신청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급별 정원 조정과 인근지역 내 원생 모집 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노혜미	02-2180-8057